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24일

장위제3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유 *연	유 *연 1960-05-29	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(장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8-24
김 *민	김 *민 1975-03-23	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(장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8-24